

개호보험에 대해서

고베시 개호보험과

○ 65 세 이상 이신 분들의 개호보험료

65 세 이상 이신 분들의 보험료는, 본인이나 가족분들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2009 년도~2011 년도의 한 명의 연간 보험료는,

① 본인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② 본인이 노령 복지 연금을 받고 있고, 또한 그 세대 모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	27, 843 엔 (월평균 2, 320 엔)
세대 모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또한 본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금액(※)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경우	➔	27, 843 엔 (월평균 2, 320 엔)
세대 모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또한 본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80 만엔을 넘는 경우	➔	41, 746 엔 (월평균 3, 480 엔)
본인에게는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세대에 시민세가 부과되는 분이 있는 경우, 또한 본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경우	➔	50, 117 엔 (월평균 4, 176 엔)
본인에게는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세대에 시민세가 부과되는 분이 있는 경우, 또한 본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의 합계가 80 만엔을 넘는 경우	➔	55, 685 엔 (월평균 4, 640 엔)
본인에게 시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	➔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61, 254 엔 (월평균 5, 104 엔)~ 111,370 엔 (월평균 9, 280 엔)

※ 합계 소득 금액이란, 수입으로부터 필요 경비(공적 연금등 공제나 급여 소득 공제등)와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 40 세~64 세의 분들의 개호보험료

가입한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포함되어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자 마다 산출한 계산방법으로 보험료를 결정)

かいごほけん 介護保険について

こうべしかいごほけんか
神戸市介護保険課

065歳以上の方の介護保険料

65歳以上の方の保険料は、ご本人やご家族の所得などに応じて決まります。

2009年度～2011年度の1人あたりの年間保険料は、

<p>①本人が生活保護を受けている場合</p> <p>②本人が老齢福祉年金を受け取っており、かつ、その世帯全員に 市民税が課されていない場合</p>	<p>27,843円 (月平均2,320円)</p>
<p>世帯全員に市民税が課されていない場合で、本人の課税の対象となる 年金収入と合計所得金額(※)の合計が80万円以下である 場合</p>	<p>27,843円 (月平均2,320円)</p>
<p>世帯全員に市民税が課されていない場合で、本人の課税の対象となる 年金収入と合計所得金額(※)の合計が80万円を超える場合</p>	<p>41,764円 (月平均3,480円)</p>
<p>本人には市民税が課されていないが、その世帯に市民税が課されてい る方がいる場合で、本人の課税の対象となる年金収入と合計 所得金額(※)の合計が80万円以下である場合</p>	<p>50,117円 (月平均4,176円)</p>
<p>本人には市民税が課されていないが、その世帯に市民税が課されてい る方がいる場合で、本人の課税の対象となる年金収入と合計 所得金額(※)の合計が80万円を超える場合</p>	<p>55,685円 (月平均4,640円)</p>
<p>本人に市民税が課されている場合</p>	<p>本人の所得に応じて 61,254円 (月平均5,104円) ～ 111,370円 (月平均9,280円)</p>

※合計所得金額とは、収入から必要経費(公的年金等控除や給与所得控除など)を差し引いた額にな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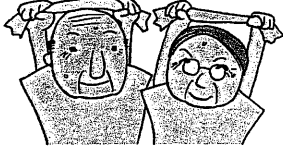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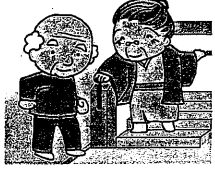
040歳～64歳の方の介護保険料

加入している医療保険の保険料に含めて納めていただくことになっています。

(医療保険者ごとに算出した計算方法で保険料を決定)

○ 개호보험으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재택 서비스

<p>방문 개호(홈 헬프 서비스) 홈 헬퍼가 가정을 방문하여, 입욕·배설등의 신체 개호나 조리, 세탁·청소·쓰레기처리등의 생활 원조를 합니다.</p>	
<p>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데이 서비스 센터 등에 다니시며, 입욕이나 식사, 기능 훈련(리ハビリ레이션)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통소리하빌리테이션(데이 케어) 노인보건시설 등에 다니시며, 전문가에 의해 기능 회복 훈련(리ハビリ레이션)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단기 입소 생활 개호(쇼트 스테이) 특별 양호 노인 홈 등 단기간 입소하여, 개호나 일상생활의 원조를받을 수 있습니다.</p> 	<p>단기 입소 요양 개호(쇼트 스테이) 노인보건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해, 개호나 필요한 기능 훈련(리ハビリ레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복지 용구 대여 휠체어, 전동 침대, 보행기등의 복지 용구의 대출할 수 있습니다.</p> 	<p>주택 리폼비용 지급 자택의 난간 설치나 계단의 높낮이를 고치는 등의 일부 비용을 지급합니다. (리폼비용 상한은 20 만엔으로, 그 범위내에서, 걸리는 비용의 9 할분을 지급합니다.)</p> 

시설 서비스

주택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특별 양호 노인홈」 등의 개호보험 시설에 입소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호보험 시설에 입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에가오 노 마도구치」의 케어 매니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かいごほけん りよう さーびす おも つぎ
 ○介護保険で利用できるサービスには、主に次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

ざいたく さーびす
 在宅サービ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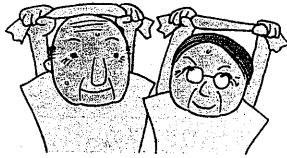
ほうもんかいご ほーむへるぶさーびす
 訪問介護（ホームヘルプサービス）

ほーむへるばーが かにい ほうもん にゆうよく はい
 ホームヘルパーがご家庭を訪問して、入浴・排せつな
 どの身体介護や調理、洗たく・掃除・ごみだしなど
 の生活援助を行います。



つうしょかいご でいさーびす
 通所介護（デイサービス）

でいさーびすせんたー
 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
 などに通い、入浴や食事
 の提供、機能訓練（リハ
 ビリ）などを受けます。



つうしょりはびりてーしょん でいけあ
 通所リハビリテーション（デイケア）

ろうじんほけんしせつ
 老人保健施設などに
 通い、専門家による機能回
 復訓練（リハビリ）などを
 受けます。



たんきにゆうしよせいかつかいご しょーとすてい
 短期入所生活介護（ショートステイ）

とくべつようごろうじんほーむ
 特別養護老人ホーム
 などに短期間入所し、
 介護や日常生活の世話
 を受けます。



たんきにゆうしよりょうようかいご しょーとすてい
 短期入所療養介護（ショートステイ）

ろうじんほけんしせつ
 老人保健施設などに
 短期間入所し、介護や
 必要な機能訓練（リハ
 ビリ）を受けます。



ふくしよくぐたいよ
 福祉用具貸与

くるま でんどうべつど
 車いす、電動ベッド、
 歩行器などの福祉用具の
 貸し出しを行います。



※要介護認定で軽度と判定された場合については、
 利用できない用具があります。

じゅうたくかいしゅうひ しきゅう
 住宅改修費の支給

じたく て とりつけ
 自宅の手すりの取り付け
 や段差をなくすなどの費用
 の一部を支給します。（改修
 費の上限は20万円で、
 その範囲内でかかった費用
 の9割分を支給します。）



しせつ さーびす
 施設サービス ※要介護認定で「要支援1・2」と認定された方は利用できません。

ざいたく せいかつ こんなん かにい とくべつようごろうじんほーむ かいごほけんしせつ にゆうしよ ひつよう
 在宅での生活が困難な方が、「特別養護老人ホーム」などの介護保険施設に入所して、必要な
 サービスを受けます。

かいごほけんしせつ にゆうしよ きぼう ばあい まどぐち けあまねじゃー そろだん
 ・介護保険施設への入所を希望する場合は、「えがおの窓口」のケアマネジャーにご相談ください。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① 65세 이상 이신 분들

입욕, 배설, 식사등 일상 생활 동작이 항상 개호가 필요한 경우(요개호 상태), 혹은, 항상 개호가 필요하지 않아도, 가사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요지원 상태)라고 인정이 되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40세~64세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

노화에 의해 생기는 병(뇌혈관 질환이나 치매증등의 16 종류의 특정 질병)에 따라서 요개호 상태나 요지원 상태라고 인정이 되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부담은 1 할입니다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걸린 비용의 1 할이 이용자의 부담이 됩니다. 다만, 1개월의 이용자 부담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는, 구청에 신청하여, 초과된 금액(고액 개호 서비스비)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마다 시민세의 과세 상황등에 따라, 15,000 엔~37,200 엔

보험료의 체납에 주의해 주십시오

○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개호 서비스의 비용을 일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후일 구청에 신청하면, 9 할이 환불 됩니다.)

○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환불 되는 9 할의 지불금이 일시 중지되거나 체납 보험료에 충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시에 미납 기간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3 할이 됩니다. 또한, 3 할이 된 기간중은, 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이나 식비·거주비의 부담경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サービスを利用できる方

①65歳以上の方

入浴、排せつ、食事などの日常生活動作について、いつも介護が必要な場合(要介護状態)、あるいは、いつも介護が必要とまではいかななくても、家事や身じたくなどの日常生活に手助けが必要な場合(要支援状態)と認定されたら、介護保険の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②40歳~64歳の医療保険に加入している方

老化に伴う病気(脳血管疾患や認知症などの16種類の特定疾病)によって要介護状態や要支援状態と認定されたら、介護保険の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利用者負担は1割です

介護サービスを利用した場合は、原則としてかかった費用の1割が利用者の負担となります。ただし、1ヶ月の利用者負担が一定額(*)を超える場合は、区役所に申請して、超えた額(高額介護サービス費)の払い戻し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 世帯の市民税の課税状況などにより、15,000円~37,200円

保険料の滞納にご注意ください

○納期限から1年以上保険料を納めないと・・・

介護サービスの費用をいったん全額自己負担する必要があります。(ただし、後日、区役所に申請すれば、9割が払い戻しされます。)

○納期限から1年6ヶ月以上保険料を納めないと・・・

払い戻しされる9割の支払が一時差し止められたり、滞納保険料に充てられたりする場合があります。

○納期限から2年以上保険料を納めないと・・・

サービス利用の際に未納期間に於いて、自己負担が3割になります。また、3割となる期間中は、高額介護サービス費の支給や食費・居住費の負担軽減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

○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우선 요개호(要介護)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① 요개호 인정의 신청

「에가오 노 마도구치」나 「안신 스코야카 센터」에, 신청서나 신청수속등을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② 인정 조사

고베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조사원이 가택이나 입원처를 방문해, 몸상태 등 전국 공통인 74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합니다.



③ 주치의 의견서

다니고 계시는 병원 의사에게, 의견서를 작성 받습니다. (고베가 의뢰합니다)

④ 개호 인정 심사회

전문가에 의한 심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가를 심사·판정합니다.

⑤ 인정·결과 통지

개호 인정 심사회의 판정 결과를, 신청자 본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⑥ 개호 서비스의 이용

「에가오 노 마도구치」등에 의뢰하여,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의 이용 조정이나 예약등을 부탁드립니다.

● 개호보험 제도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구조, 수속, 에가오 노 마도구치의 정보 등)
고베시 개호보험과 (일본어) 전화 322-6228

● 인정 조사등을 할 때에, 통역 자원봉사자 파견을 받으시려면
(일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친족등의 원조가 없는 분)

파견 단체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 고베 정주 외국인 지원 센터(KFC)

전화 612-240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かいごほけん さーびす りよう ようかいごにんてい う ひつよう
○介護保険のサービスを利用するには、まず要介護認定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

① 要介護認定の申請

「えがおの窓口」や「あんしんすこやかセンター」に、申請書の取り寄せ
や申請の手続きを依頼されると便利です。

② 認定調査

市から委託を受けた調査員がご家庭や入院先へお伺いし、お体の
状況など全国共通の74項目について聞き取り調査を行います。

③ 主治医意見書

かかりつけ医に、意見書を作成してもらいます。(神戸市から依頼します)

④ 介護認定審査会

専門家による審査会が、どの程度の介護が必要かを審査・判定します。

⑤ 認定・結果通知

介護認定審査会の判定結果を、申請者ご本人に文書で通知します。

⑥ 介護サービスの利用

「えがおの窓口」などに依頼して、ケアプランの作成、サービスの利用調整や予約などを行っ
てもらいます。

● 介護保険制度が知りたいときは(しくみ、手続き、えがおの窓口の情報など)

神戸市介護保険課(日本語) ☎ 322-6228

● 認定調査などの際に、通訳ボランティアの派遣を受けるには

(日本語による意思疎通が困難な方で、親族などの通訳などの援助がない方)

派遣団体 特定非営利活動法人神戸定住外国人支援センター(KFC)

☎ 612-2402